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26873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명진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2017. 5. 23.자 50,000,000원, 2019. 5. 27.자 10,560,000원, 2019. 12. 30.자 10,0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70,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취득

1) D은 2017. 5. 4.자 연대보증계약에 기초하여, C 및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가합11호로 연대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1. 30. 위 법원으로부터 'C 및 E 등은 공동하여 D에게 3억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2) D은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로 항소하였다. 위 법원은 2019. 8. 28. D의 항소 중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만을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D을 상대로 받은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차1904호, 2019차1220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타채 749호로, "D이 C에 대한 대전고등법원 2019나65호 매매대금 등 사건의 확정된 판결정본에 의하여 가지는 청구권 전부 및 종된 권리 중 청구금액 4억 4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9. 10. 2. 위 신청을 받아들여 위와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의 재산 및 가족상황 등

1) E는 2017. 10. 16.경 강원도 평창군 F 외 5필지 지상에 빌라 및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공사비 미지급 지급이행각서'를 작성하여 C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총 2,524,7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C는 E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513899호로 위 지급이행각서에 기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1. 18. 'E는 C에게 2,524,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E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70524호)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019. 11. 15. 항소를 기각하되 C가 지급받을 액수를 항소심에서 감축된 청구금액인 '24억 6,47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C는 2017. 5. 24. 원고의 가족이 거주할 임대주택 보증금의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증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4) C는 1991. 2. 4. 피고와 혼인하여 2019. 1. 19.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19. 2. 15. 이혼하였다. 이후 C는 2020. 9. 8. 사망하였다.

1. 집 38평 이상 1세대 지급한다.
2. 두 딸 결혼자금과 각 집 한 채씩 지급한다.
3. 서울집 대출금을 전액 갚아준다.
4. 2년마다 올라가는 보증금 1,500만 원을 책임진다.
5. 위자료를 이혼 후에도 꼭 지급한다.
6. 배신하지 않는다.
7. 위 6가지 항목을 약속이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11, 30호증,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C는 2017. 5. 23. 무자력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우체국금융계좌에서 5,00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는바, 이는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후 C는 피고의 가족들과 기능적 역할분담을 하여 거래대금을 불법 세탁하였는데, 2019. 5. 21.경 자녀인 G 등의 계좌로 현금 입금하였다가 2019. 5. 23.경 피고에게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14,980,000원¹⁾ 을 증여하여 2019. 5. 27. H공사에게 임대료 인상분 10,560,000원 지급으로 사용하게 하였고,²⁾ 2019. 12. 30.에도 I으로부터 받은 거래대금 40,000,000원 중 10,000,000원을 피고에게 곧바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C와 피고는 배우자간이라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로서 이 사건 증여 등에 따른 현금을 임의 소비한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 각 증여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2019. 5. 27.자 및 2019. 12. 30.자 송금행위에 대한 판단

1)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 기존 채무에 대한 변제라고 다룰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원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또한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다22272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5, 19, 25,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I이 2019. 5. 20. C의 계좌로 거래대금 30,000,000원을 입금하자 같은 날 그중 22,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다음 날인 2019. 5. 21. G의 계좌로 합계 10,190,000원, J의 계좌로 합계 6,700,000원이 각 현금 입금된 후 2019. 5. 23.까지 J의 계좌에서 6,720,000원 및 G의 계좌에서 8,280,000원 합계 15,000,000원³⁾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 이후 피고가 2019. 5. 27. 위 피고의 계좌에서 인출한 돈으로 임대료인상분 10,560,000원을 납부한 사실, I이 2019. 12. 30. 15:58경 G의 계좌로 C와의 거래대금 4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23:09경 위 G의 계좌에서 10,000,000원이 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 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위 2019. 5. 27.자(또는 2019. 5. 23.자) 및 2019. 12. 30.자 각 송금행위는 그 송금액이 최대 10,000,000원을 넘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③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19. 5. 27.자 송금액은 피고 가족들의 임대차보증금 증액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서 C와 피고 가족들의 생활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고, 원고가 2019. 12. 30.자 송금액에 대해서는 C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만 주장할 뿐 위 송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못한 점, ④ 위 각 송금액 외에도 피고와 C 사이에 별도의 금전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송금내역이 다수 존재하는 점(을 제10호증 참조)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C가 피고에게 2019. 5. 27.(또는 2019. 5. 23.경) 및 2019. 12. 30. 각 송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C와 피고가 실제로는 위장 이혼한 것이라고거나 C의 자녀들이 2019. 9. 17. 이후 해결사를 자처하는 사람과 상호협력하여 망인의 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은닉하였다는 등의 원고의 주장은 위 각 송금행위가 증여행위 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어서 그 진위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위 각 송금액에 관하여 C와 피고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증여행위에 대한 판단

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등 참조), 그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다211408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갑 제3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K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가합194호 등으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에서 위 법원에 의해 'C가 2019. 8. 1.경 금전소비대차계약, 도급계약, 토지매매계약, 준소비대차계약 등에 기초하여 최소 70억 원 이상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판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증여행위는 2017. 5. 24. 이루어진 것이어서 약 2년 후 사실관계에 관한 위 관련 판결의 판단만으로 이 사건 증여행위 당시에 이미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2016. 6. 24.자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갑 제8호증)에 기하여 C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위 공정증서는 C가 L 등의 토지 매매대금 3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토지 매도인에게 보증하는 내용이어서 향후 C가 L 등을 상대로 보증채무에 상응하는 구상권채권을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공정증서의 약정된 변제기(2016. 7. 20. 1억 원, 2016. 7. 30. 5억 원, 2016. 10. 20. 5억 원, 2016. 11. 20. 5억 원, 2017. 2. 28. 19억 4,000만 원)에 실제 위 매매대금의 변제가 지체되어 C가 동일 금액의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는지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E로부터 지급받을 24억 원 이상의 공사대금 채권이 있었고, 그 외에도 진행 중이던 여러 건물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가 이 사건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C가 채무초과 또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하여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추진석

1) 15,0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2) 원고는 2019. 5. 23.경까지 송금 합계액 14,980,000원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에서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을 2019. 5. 27.자 증여행위로 특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위 금액이 14,98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